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지원계획

- 직 원 교 육 자 료 -

2022. 11. 1. (14:00 기준)

복 지 정 책 실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지원계획

'22.10.29. 발생한 이태원사고 사망자 유족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장례지원 및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고개요

o 이태원 사고로 15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되는 등 시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수습에 두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발생일시** : '22.10.29.(토) 22:15 경 * 국가애도기간 : '22.10.30.~11.5.[7일간]

▶ **발생장소** :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서편 골목**(이태원로 173-7 일대)

▶ **인명피해**('22.10.31. 0시 기준)

· 사망: 최소 154명(내국인 127명, 외국인 26명, 불상 1명) * 해외 14개국





□ 지원방향

- o 사망자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익일부터 진행될 장례 절차 등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1:1 매칭 추진
 - 대상 : 복지정책실(총괄), 기획조정실·경제정책실(협조)
- 이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제일 우선하여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
 - 피해가족과 공감대 형성, 수시 안부인사(식사, 잠자리, 건강상태 등), 각종 지원사항 안내 등

□ 유가족 지원내용

- o 사망·부상자 가족을 위한 생활안정금 지급(재난관리기금:국비 70%, 시비 30%)
 - 사망·실종자 : 2,000만원
 - 부상자 : (1-7등급) 1,000만원, (8-14급) 500만원
 - ※ 가족이 함께 사망 또는 부상당한 경우 각각 지원 가능
- ㅇ 사망자 가족을 위한 장례비 지급
 - 지원금액 : 1.500만원(정액 지원)
 - ※ 지원예산은 시도, 시군구별 자체 편성 지원후 국비로 사후 보전
 - 지원대상 : 사망자 유가족
 -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외국으로 시신 이송하는 경우 포함)
- ㅇ 사망자 가족 숙박비 지원
 - 지원기준 : 1가구 1박당 7만원(최대 7일 지원, 실비 정산 지원)
- ㅇ 전담공무원 1:1 매칭을 통한 장례절차 행정지원, 소통 및 의견수렴
 - 지원원칙 : 소통 최우선, 요청사항 수시파악, 신속해결
 - 지워내용
 - ①유가족과 공감대 형성 : 수시안부인사(식사, 잠자리, 건강상태 등)
 - ②사망 유가족에 대한 지원사항 안내, 요구사항 수시파악·신속해결
 - ③소방, 경찰 및 관련 부처와 수시로 소통 및 업무협력, 각종 편의 제공
 - ※ 생활안정금 및 장례비 지원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유족별 전담공무원 지정 및 운영
 - ※ 사망자 유품 및 관련 물품처리 문의 : 경찰 및 병원 원무과로 안내
 - ※ 유가족 심리상담 지원(보건복지부) : 국가 트라우마센터(1577-0199)

□ 직원 안내사항

ㅇ 유의사항

- 지원내용은 정부와 서울시의 결정 및 지침에 따라 신속히 지원되는 사항임을 원론적으로 안내한 후 배부된 FAQ 참조하여 성심껏 안내
- 장례는 기본적으로 유족의 뜻에 따라 처리
- 외국인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방법은 외교부와 가족문화담당관(시) 에서 별도 협의후 확정할 예정
- 사망자 등 관련 현황정보는 반드시 내부업무 추진자료로만 활용하고 공식자료는 경찰 및 소방자료만 기준으로 함(※개인정보 유의)
- 언론 문의시 개별답변 말고 우리시 재난대책본부에 문의하도록 안내

ㅇ 행동요령

- 황망하고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니 웃거나 농담 등 언동에 유의
- 현장상황을 상세 간결하게 팩트 중심으로 공유
- 교대근무시 **후임자와 함께 한시간 이상 함께 인수인계** 시간 갖고, 상황변동사항 충분한 사전인지
- 병원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시 공무원증, 관련 협조공문 등 제시
- 유족들에게 전담공무원의 1:1 매칭으로 내 가족처럼 지원하는 느낌 받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응대

붙임 : 1. 이태원 사고 관련 FAQ

- 2. 화장 관련 QnA
- 3. 신청서식

붙임1 이태원 사고 관련 FAQ

【문의처】 * 현장지원 인력만 문의요청

- ㅇ 생활안정금, 장례비 : 2133-7749, 7331, 7347
- o 전담공무원 배치, 기타지원 : 2133-7314, 7319, 7315

Q.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에는 무엇이 있나요?

▶ 서울시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사망자의 경우 2천만원, 부상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1~7급은 1천만원, 8~14급은 5백만원을 정액지급합니다.
또한 장례비는 유족들에게 15백만원 정액지급합니다.

- Q. 장례비 등 비용 지원은 어떻게 되며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하나요?
 - ▶ 장례관련 지원은 유족에게 15백만원 정액 지원됩니다.
- Q. 장례비용을 장례식장에서 직접 청구 가능한가요?
 - ▶ 유족거부, 외국인의 경우 등 부득이하게 장례업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비지급으로 15백만원 범위에서 사망자의 주소지 시·군·구청장에게 장례비 집행 영수증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5백만원에 미달하는 차액은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Q. 장례업체에서 장례비 실비지원하는 경우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 ▶ ①이송비(타지역 장례식장 이송비용, 응급이송차량 이용비 포함), ②검안비용 ③빈소사용료, ④안치실이용료, ⑤상주용품 ⑥영정사진 ⑦화장비 ⑧제사음식 ⑨제단 ⑩관,수의,입관용품 ⑪유골함입관
 - ②숙박비(유족이거주하는숙소) ③식사비 등 장례절차에 포함되는 것,
 - ⑭납골당 안치비(임시납골당 비용, 분양비 등)도 포함됩니다.

- Q. 화장장 예약이 꽉 차서 예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 ▶ 서울시립 화장장을 특별가동할 예정이오니 관련 문의사항은 02-2133-7432~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Q. 외국으로 시신을 이송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나요?
 - ▶ 지원가능하나 장례비는 최대 한도 15백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 Q. 사망자와 유족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장례지원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사항을 지원 받고 신청 절차는?
 - ▶ 외국인 사망자도 차별 없이 지원합니다. 사고 발생지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 하면 됩니다
- Q. 사망자와 유족 모두 외국인인 경우 장례지원이 되는지, 된다면 어떤 사항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 ▶ 외국인 사망자도 차별 없이 지원합니다.
- Q. 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지?
 - ▶ 행안부에서 지원할지 검토중입니다.
- Q. 장례식장 이전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 유족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장례를 치르더라도 장례비는 지원가능 합니다.
- Q. 다른 피해자 유족분들과 합동장례가 필수인가요? 개별적으로 치를 수 있는 건가요?
 - ▶ 장례절차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 Q. 다른 피해자 유족분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 공유가 가능한가요?
 - ▶ 다른 유족 연락처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공유해 드릴 수 없습니다.
- Q. 합동장례와 개인장례 진행 시 장례비 보상에 차별이 있나요?
 - ▶ 장례비용은 모시는 장소 상관없이 차등없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Q. 합동분향소는 어떻게 계획 중인가요?

- ▶ 합동분향소에 개별 위패는 모시지 않는 형태로 준비 중이며, 10.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광장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Q. 타 지역 화장장 이용 시 지원 비용에 차이가 있나요?
 - ▶ 장례비용은 모시는 장소 상관없이 차등없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 Q. 장례식장은 협약기관이 아닌 곳도 지원 가능한지
 - ▶ 유족의 의사에 따라 일반적인 장례절차 진행 가능한 곳은 가능합니다.
- Q. 장례치르기 위해 유족이 숙박시설 이용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요?
 - ▶ 1가구에 1박당 7만원 범위내에서 실비정산 지원 가능합니다 (관할 주소지 기초지자체에 신청)

붙임2 **화장 관련 QnA**

1. 화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화장시설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모바일 가능)을 검색하여 접속한 후, 화장예약서비스 바로가기 클릭하여 화장시설(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및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 가능합니다.

대부분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에서 화장예약서비스를 대행합니다. 다만, 유족으로부터 화장예약 방법에 대해 직접 문의받은 경우,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하고,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에 예약 여부 먼저 확인한 후, 어르신복지과 담당자(02-2133-7433)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2. 서울이 아닌 타·시도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은 전국 65개 화장시설 모두 예약신청 가능합니다.

3.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 희망일시 예약완료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희망일시에 예약완료인 경우, 10. 31.~11. 5. 서울시립 화장시설(서울시립승화원, 서울수모공원)에 한해, 18:00~20:00 특별회차 운영합니다(다만, 시립 화장시설도 화장로 가동에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희망일시 당일 12시(정오)까지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로 붙임 양식으로 신청해 주셔야, 희망일시에 화장 가능합니다.)

4. 화장시설은 어디에 있나요?

서울시립화장시설은 경기도 고양시, 서초구 원지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타시도 화장시설에 대한 위치 정보도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있습니다.

5. 화장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의 관내자 대인 사용료는 12만원, 관외자 사용료는 100만원이나, **이태원 사고 사망자 화장비용은 전국 어느 곳에서든 관내 비용 적용**입니다.

빠짐없이	모든 정보가 있	J어야 화장예약	가능합니다.		
파일명에	원하는 화장일	시, 사망자 주소:	지 구청, 사밀	자명(장례식장명)	기록
(예) 파일	명: 221031(18	3시) 종로구 홍길	동(장례식장명	기입)	

화장예약 필요정보

작용에를 들표 8	3 .	
	〈화장예약일 : 22. 11.	.>
1. 고인 성명 :		
2. 고인 주소 :		
3. 고인 주민등록번호 :		
4. 신청자(유가족) 성명 :		
5. 신청자 주소 :		
6.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		
7. 신청자 핸드폰번호 :		
8. 신청자 이메일 :		
9. 신청자와 고인과의 관계 :		
10. 장례식장 담당자:		
11. 사망 일자 :		
12. 사망 시간 :		
13. 작성 주무관 성명 및 연락처 :		
14. 특이사항 기재 :		
○ 특이사항을 메일 본문이 아닌 이 부분에 기	기록해 주세요	

〈서울시 담당자 연락처〉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02-2133-7428, 7432~7434

붙임3

신청서식 (생활안전지원금 신청서, 장례비 지급청구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개정 2018. 11. 13.>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쪽	유의 작성방법을 읽고	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디	·.	(앞쪽)
접수번	호	접	수일		처리기간	
1. 신	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본인 [] 부	모 [] 형제 []	기타()
	성명			주민등록번호		_
	주소			휴대전화번호	_	_
2. 피	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등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	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_
	주소					
	주거 형태	소유자(실거주)	[], 소유자(미	거주) [], 세입	자 [], 공공임	
연락:	이동전화 처		통신사명	[]KT []SKT []LGU+ []기타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유선전화	() –			가입자정보	성명: 생년월일:
	비대주 여부	[] 세대주, [가족 수	명 (본인표	E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세대원 중 1등학생 수	() 고등 ⁵ () 고등 ⁵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도시기	가스 사용 여부	사용 [], 사용	안함 []	가입자명:	생년월일:	
3. 피	해내용					
피	해발생 일시					
피	해발생 장소					
인명	신고	[] 사망・실종, [] 부상 (부성	상정도:	, 치료기관명:)
피해		[] 사업피해 (휴업	[]/ 폐업[] / 실직 [])		
,	확정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정도	Ξ:), []	사업피해(휴업 []/폐업[]/실직[])
	시설명	1	2)	3	(4	.)
	총면적(소유+임차)	1)	2	3	(4)
	면허·허가· 등록 번호	1	2	3	(4	
시설	피해 신고	1	2	3	(4	
피해	물량 확정	1	2	3		
	피해 구분	1	2	3	(4	
	피해 원인	1	2	3	(4	
	융자신청 여부	[]	[]	[]	[]
4. 확	인사항					
동일/	네대 신고 여부	신고 [] 신고 안함 []	내용:			
	별자치시 • 특별 도 • 시 • 군 • 구	신고 []	내용:			
교	해신고 여부	신고 안함 []	T C I -1-2		리 미 펜스트	
등을	[†]	보구 비용 부담기를 의와 같이 신고합니다	<u>분</u> 능에 관한 · ·		앙 및 제3항0	세 따라 생활안정지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트볔	자치시작 • 특	특별자치도지사 ·	• 시작 • 구:	신고인 수 • 구청 잗 ¬	나하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주(主) 생계수단 확인 및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을 받으려는 해당 재난피해자를 말합니다.
- 2. 부상정도는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 4. 음영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적습니다.

지급

4

5. 피해자 정보는 간접지원 실시기관에 제공되어 간접지원 업무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10mm $\times 297$ 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지출요청(회계부서)

장례비 지급 청구서(장례기관용)

[장례비 지급 청구서]							
장 례 비	성 명		Ą	생년월일			
지 원 대 상 자	주 소		(전화	:)		
	장례기관명		대표자			·업자 록번호	
장례지원	장례기관 주소						
	장 례 일 자		I	년 월	걸	일	
청구	그 금 액		금	원(₩)		
금 융	기 관 명		계좌번호		0	계금주	
위	와 같이 장례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 기관(상호) 명 대 표 자 (서명) 시장·군수·구청자 귀하							
구비서류	1. 계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구비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3. 장례비집행 영수증 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ᄾ
개인정모	수십	닟	이공	중의,	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장례비 지급 청구서(개인용)

[장례비 지원 신청서]									
11 +1 01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지원대상자 와의 관계		
신 청 인	주	소							
지급계좌	금융	용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TLAILUI	Y	녀명		생년월일					
장례비 지 원	2	소							
, –	장 려	일 자			년	월	일		
위	위와 같이 장례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자 귀하									
1. 계좌사본 1부 구비서류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장례비 지급 청구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재난사고 수사·3	도사 종료 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개인정보수집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